

고 발 장

고 발 인 장경욱 외 8인

피고발인 1. 이병호(전 국가정보원장)
 2. 홍용표(전 통일부 장관)
 3. 정지용(국가정보원 해외정보팀장으로 가명일 수 있음)
 4. 성명불상자들(국가정보원 직원들 및 관련자들)

범죄명 : 국가정보원법 제11조(직권남용) 및 제19조(정치관여금지) 위반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인도에 반한 죄) 위
반죄, 강요죄(형법 제324조), 체포·감금죄(형법 제276조),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귀중

고 발 장

- 고 발 인 장경욱 외 8인 (별지 기재)
- 피고발인 1. 이병호(전 국가정보원장)
2. 홍용표(전 통일부 장관)
3. 정지용(국가정보원 해외정보팀장으로 가명일 수 있음)
4. 성명불상자들(국가정보원 직원들 및 관련자들)

범죄명 : 국가정보원법 제11조(직권남용) 및 제19조(정치관여금지) 위반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인도에 반한 죄) 위반죄, 강요죄(형법 제324조), 체포·감금죄(형법 제276조),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

고 발 취 지

피고발인들은 2016. 4. 7.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2016. 4. 13.)에 즈음하여 중국내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하여 위 종업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도록 하고 이를 선거에 이용하였으며, 또한 입국 이후 위 종업원들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집단적으로 감금하였고, 나아가 이들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하여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 및 정치관여금지죄, 형법상 강요죄 및 체포·감금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인도에 반한 죄’,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범죄에 해당하는바,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당사자 관계

고발인들은 2016. 4. 7. 피고발인들에 의하여 자유의사에 반하여 대한민국에 강제로 입국한 중국내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의 부모들로부터 위 종업원들의 모든 법률상 대리권을 위임을 받은 변호사들입니다.

피고발인 이병호는 2016. 4. 당시 국가정보원장, 피고발인 홍용표는 당시 통일부장관, 피고발인 정지용은 국가정보원 해외정보팀장(가명일 수 있음), 그리고 피고발인 성명불상자들은 국가정보원의 직원들로서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한 자들입니다.

2. 범죄 사실

가. 이 사건의 경위

(1) 2016. 4. 7. 중국 저장성 Ningbo시 소재 '류경식당' 이라는 상호의 북한 해외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식당 지배인 1인 및 여성종업원 12인이 함께 국내 입국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6. 4. 8. 통일부 대변인은 "이들이 집단 탈북하여 2016. 4. 7.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들은 다른 탈북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입국 직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이라 합니다)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피진정인이 설치·운영하는 임시보호시설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소재)에 수용되었습니다.

(2) 북한에 있는 종업원 12명의 가족들은 이들이 자의로 남한에 입국한 것이 아니고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자의에 반하여 구금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에 대하여 이들을 송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6. 4. 18. 유엔인권최고대표와 유엔인권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송환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이 순전히 자발적인 의사로 입국하였으며 가족들의 송환 요청 및 가족과의 대면 요청 등에 대하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3) 위 가족들은 2016. 5. 24. 고발인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신보호법에 따른 인신구제를 청구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인2 사건), 이에 따라 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이 2016. 6. 21. 로 지정되었습니다. 고발인들은 2016. 5. 16., 2016. 5. 24., 2016. 5. 27., 2016. 6. 3. 및 2016. 6. 15. 등 수차례에 걸쳐 위 종업원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당시 국정원장인 피고발인 이병호는 이를 모두 불허하였습니다. 나아가 고발인들이 위 종업원들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서신 및 책자에 대하여도 유해물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입을 거절하였습니다.

(4) 위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이영재 판사는 2016. 6. 10. 위 종업원들에게 심문기일 출석을 명하는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들은 2016. 6. 14. 위 통지서를 모두 송달받은 것으로 법원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피고발인 이병호는 위 종업원들이 법정출석을 원하지 않아서 출석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을

지정된 위 심문기일인 2016. 6. 21. 14:30에 단 한명도 출석시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발인 이병호는 위 종업원들에 대해서 2016. 6. 3. 경 자신이 보호결정을 하였고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제 1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 종업원들을 통일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하나원)이 아니라 자신이 설치·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계속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2016. 8. 16. 경 위 종업원들이 모두 위 보호센터에서 퇴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나. 이 사건 ‘강제탈북’ 범죄 사실

(피고발인 이병호, 정지용, 성명불상 국정원 직원)

(1) 피고발인 국가정보원 직원 정지용은 2014. 12. 초경 중국 상해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류경식당 지배인이었던 허강일을 만나서 허강일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위해 끝까지 충성할 것이며 맹세하며 싸우겠다.”는 내용으로 서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수령하고 그 자리에서 태극기를 들고 허강일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2) 그 후 허강일은 위 피고발인 정지용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의 정보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허강일은 국정원과의 관계가 그의 지인에게 탄로 나게 되었는데, 그 지인은 허강일에게 “돈 1억원을 주지 않으면 국정원과 허강일의 대화내용을 북한에 주겠다.”고 협박을 하였고 이에 허강일은 피고발인 정지용에게 탈북을 하겠다고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허강일은 처음에는 혼자 탈북을 하려고 하였는데 국정원 직원인 피고발인 정지용은 “무조건 종업원들 모두를 데리고 와라. 박근혜 대통령이 비준한 작전이고 기다린다. 큰 작전이 있다. 도와달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허강일이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북쪽에 있는 가족들이 피해를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겠나. 담보못하겠다.”라고 하자, 위 정지용은 다시 “ 같이 오지 않으면 너를 북한대사관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발인 정지용은 “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무공훈장을 주고, 국정원 직원으로 같이 일하자. 원하는 걸 다 들어준다.”라고도 하였습니다¹⁾

(3) (입국날짜를 4월 7일로 한 이유) 허강일과 정지용은 처음에는 탈북 계획을 2016. 5. 30.로 잡았는데, 피고발인 정지용은 허강일에게 2016. 4. 3. 밤에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긴급상황이 발생하였다. 4월 5일 무조건 출발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비준한 작전이고 대통령이 기다린다. 이 소식을. 내 국정원 윗분들이 이 작전 때문에 정말 다 기다리고 있다. 이 작전이 실패하는 날에는 나는 물론 국정원에 술한 간부들이 다 잘린다. 살려 달라.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애국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와 관련하여 이후 허강일이 정지용에게 “언론에 우리 탈북사진을 왜 공개하였고, 그 목적이 뭐냐?”라고 묻자, 정지용은 “민주당은 중복세력이다. 그래서 그걸(민주당) 이기려고 우리네(국정원)가 공개했다.”라고 하였습니다.

(4) (종업원들이 자유의사가 아닌 강제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점) 집단 탈북 당시 허강일은 종업원들에게 그냥 숙소를 옮긴다고 하였습니다. 허강일은 2016. 4. 3. 피고발인 정지용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즉시 종업원 22명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이를 바로 이메일로 국정원 직원 정지용에게 보냈습니다. 종업원들은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에 들어갈 때까지도 한국으로 가는지 조차 전혀 몰랐습니다. 위 대사관 앞에서 종업원들이 태극기를 보고 우왕좌왕 하는 상황에서 허강일은 “안으로 들

1) 이하 허강일 및 종업원들의 진술 내용은 2018. 5. 11.자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 보도 내용 참조

어가라. 너희들이 나랑 남쪽으로 가지 않고 북으로 돌아간다면 너희는 죽는다. 살고 싶으면 나를 따라오라.”라고 협박하였습니다.

(5) (종업원들의 진술) 종업원들 중 4명의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2년을 숨어 지내며 봤는데, 이제야 퍼즐을 맞춘 것 같고 뭔가 이용당한 느낌이고 이용당하고 허무한 느낌이 든다. 이제 누구든지 손발을 떼어야 한다는 생각에 인터뷰에 응했다.” “탈북 당시의 종업원들의 상황은, 4월 5일 평상시와 같이 출근해서 낮잠까지 잤다. 허강일이 며칠 전부터 숙소를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해서 짐을 다 싸놓았다. 전에 연길에서 닝보로 이사갈 때도 조용히 옮긴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 건 줄 알았다. 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숙소를 옮기는 줄 알았다. 당일 3명의 종업원이 사려져서 허강일 표정이 좋지 않았다. 허강일이 종업원들에게 택시를 타라고 해서 택시를 탔다. (당일 사라진 종업원들은 북 보위부에 신고하러 간 것이었음). 말레이시아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갔다. 도착했는데 태극기가 보였다. 한국대사관이었다. 그때 한국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때 허강일이 종업원들에게 협박을 하였다. 종업원들이 돌아가면 한국드라마 본 것을 보위부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한국영화를 보면 총살이나 지방에 내려 보내고 가족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다고 위협을 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말이 되나 싶은데 그때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 선택의 순간을 다시 되돌리고 싶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한국에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왔다.’라고 말했는데 국정원 면담관이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 있는데 당신은 왜 다르게 말 하나.’라며 생각 밖의 반응을 보여서 당황했다. 여기 온 것은 지배인이 알아서 한 것이지, 우리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오겠다고 신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의사로 왔다고 발표한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2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자의로 왔다고 하건 납치라고

하건 일이 커질 것 같으니깐 그냥 막 피했던 것 같다. 어떤 말이든 부모님께 다 불이익이 되니까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북에 계신 부모님께 잘 지낸다는 한 마디만 전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들었고, 내가 얼굴 한번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북에 계신 부모님께 불이익이 될 까봐 죄송하다. 여기서 사는 것 같지 않고 이제라도 갈 수 있다면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

다. 이 사건 ‘감금’, ‘변론권 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범죄 사실

(1) 감금행위(피고발인 이병호)

피고발인 이병호는 종업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한국으로 오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의사로 탈북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자발적으로 한국에 들어왔다는 전제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4개월간 외부와의 접촉이 불가능한 상태로 감금된 상태로 생활하도록 하였습니다.

(2) 고발인들의 변론권 침해 행위(피고발인 이병호)

고발인들이 변호사로서 종업원들에 대하여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거부하고, 접촉을 차단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종업원들의 권리와 변호인들의 접견권을 침해하였습니다.

(3)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치관여 행위(피고발인 이병호, 홍용표)

당시 국정원장 이병호와 통일부 장관 홍용표가 공동으로 통일부 대변인으로 하여금 종업원들의 입국 이후 하루만인 2016. 4. 8.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사실을 발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습니다. 피고발인 이병호는 국가정보원법(정치관여금지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4) 허강일에 대한 피고발인 이병호와 정지용의 교사행위

허강일은 종업원들을 협박하여 탈북 및 한국으로의 입국을 강요하여 종업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고, 국정원장이었던 피고발인 이병호와 국정원 직원이었던 피고발인 정지용, 그밖의 성명불상의 국정원 직원들은 허강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강요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습니다.

3. 적용법조

가. 피고발인 이병호, 피고발인 정지용 및 성명불상 국정원직원들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

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고지)하는 행위

제11조(직권 남용의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정원 직원으로서 제16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포함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교통·수진(수진)]와 같은 법 제209조에 따라 수사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87조(구속의 통지), 제8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수진), 제90조(변호인의 의뢰)

2. 「군사법원법」 제63조(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 등)와 같은 법 제232조의6에 따라 수사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7조(구속의 통지), 제12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등) 및 제130조(변호인의 의뢰)

제19조(직권남용죄)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정원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교통·수진, 구속의 통지, 변호인 아닌 자의 피의자 접견·수진, 변호인의 의뢰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의자, 변호인 또는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인도에 반한 죄) ①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8. 사람을 장기간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정치단체의 허가·지원 또는 묵인하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이하 "체포등"이라 한다)한 후 그 사람에 대한 체포등의 사실, 인적 사항, 생존 여부 및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나. 가목에 규정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외의 방법으로 사람의 신체와 정신에 중대한 고통이나 손상을 주는 행위

나. 피고발인 홍용표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 결 론

이 사건은 허강일이 2016. 4. 3.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피고발인 이병호와 국가정보원 직원인 피고발인 정지용의 지시를 받고 그 정을 모르

는 종업원들에게는 다른 식당으로 이사간다는 명목으로 짐을 싸게 하고 종업원들을 말레이시아의 한국대사관으로 이동시킨 후에,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면 죽는다고 협박을 하여 강제로 종업원들을 한국으로 유인 납치한 사건입니다. 더욱이 국정원이 종업원들을 집단으로 탈북시킨 동기는 당시 국회의원 총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함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본 범죄는 대한민국이 인권침해의 범죄국으로서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오욕의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나아가 피해자 종업원들과 그 부모들에게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로 강제로 격리되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인권침해의 극악한 범죄입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의 진실을 확실하게 밝혀내고, 관련자들의 관계 및 구체적인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하며, 나아가 다시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하여 대한민국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8. 5. 14.

고발인 대표 장 경 욱

고발인 권정호, 오민애, 김용민, 김진형, 김자연, 양승봉, 신윤경, 김인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별지)

고발인 명단

변호사 장경욱

이상,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2, 4층(서초동, 영생빌딩)

법무법인 상록

대표전화 02-3482-3348, 팩스 02-3482-4477

변호사 권정호

변호사 오민애

이상,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114, 6층(서초동, 일괄빌딩)

법무법인 향법

대표전화 02-582-0606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김자연

이상,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13길 5, 6층(신사동)

법무법인 양재

대표전화 02-6925-2222

변호사 양승봉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34, 6층(서초동, 신정빌딩)

법무법인 율

대표전화 02-523-9904

변호사 신윤경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4길 75, 4층(서초동, 엠엘빌딩)

대표전화 02-6203-1020

변호사 김인숙

서울시 중구 동호로 10길 8, 3층